과업지시서

「강북문화재단 무대조명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 용역」

2026. 11.

문화의 힘
강북문화재단
Gangbuk Cultural Foundation

01 과업개요

본 과업지시서는「강북문화재단 무대조명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 용역」계약건의 부속서류로서 과업의 이행 범위·방법·목적을 포함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과업건명:** 강북문화재단 무대조명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 용역
2. **과업목적:** 강북문화재단 무대조명설비의 점검 및 노후 부품 교체, 할로겐 기반 저효율 시스템의 개선을 함께 시행하여 안정적인 조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3. **계약방법:**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4.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02 과업범위

1. **과업내용:** 무대조명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
 가. 설비 구성 조명기의 점검 작업을 통해 조명설비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고 잠재적 고장요인을 예방한다.
 나. 설비의 전력소모량 및 광원 교체주기를 개선하여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다.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줄임으로서 신규 장비 구매 대비 경제적인 시스템 개선을 도모한다.

2. **수행범위**
 가. 조명설비 전반의 상태 개선을 위한 노후·불량 부품 진단 및 교체 포함
 나. 작동상태 및 주요 구성부품 점검 대상에 설비 구성 조명장비를 포함
 다. 할로겐 램프 기반 시스템의 발열 및 전력소모량 개선을 위한 광원 교체의 과업 포함
 라. 상기 과업을 통해 무대조명 시스템의 안정성 및 유지관리 효율 확보

03 책임

본 과업의 시행사는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와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사고, 시행사의 직원이 해당 과업건의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시설물에 대한 모든 보완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04 과업지침

1. **면책사항:**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의 장애에 대해, 시행사는 보수·정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발주처는 별도의 비용 부담으로 시행사에 보수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소요사태
 나. 발주처의 고의적인 사고
 다. 발주처 임의로 시설물의 개조 또는 규격이 다른 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라. 시설물 설치 장소의 부적당한 가동 현황
 바. 시행사가 제시한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상

2. **수행지침**

 가. 계약 상대 시행사는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재단(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나. 시행사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
 다. 시행사는 발주처가 필요를 인정하는 추가 과업 지시 및 기타 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 따른다.
 라. 본 과업 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과업 추진 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재단과 협의하여 그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에서 시행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시행사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한다.
 바. 본 과업 수행의 결과물이 불완전하거나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수정 및 보완을 시행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행사가 진다.

05 보안사항

1. 시행사는 강북문화재단 공연장의 과업 수행 장소에 출입한 기술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강북문화재단 공연장 업무상의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시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3. 시행사는 강북문화재단 공연장의 공연·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전 허가 없는 물품의 반·출입 및 조작, 타 업무에 대한 간섭 등 과업의 계약 및 지시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06 기간 내 계약 해지

발주처는 계약 만료 일자 이전에 시행사가 본 과업의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할 때 또는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본 과업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